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4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3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	2017누81603 취득세부과처분취소
원고, 항소인	1. A
	2. B
피고, 피항소인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제 1 심 판 결	서울행정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구합58908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1. 18.
판 결 선 고	2018. 2. 8.

주 문

1.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6. 5. 10. 원고들에게 한 별지 [표] 기재 각 취득세(가산세 포함, 이하 같다), 지방교육세,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4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<고치는 부분>

○ 제1심 판결 제3쪽 제1행의 각 "재산세"를 "취득세"로 각각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 제10쪽 제5행의 "을 제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"를 "을 제7 내지 14호증의 기재와 영상"으로 고친다.

2. 결론

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,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문용선

판사 김복형

판사 남양우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03-14

별지

[표]

(단위: 원)

원고	취득세	지방교육세	농어촌특별세	합계
A	49,180,320	4,102,030	2,051,010	55,333,360
B	49,827,860	4,156,040	2,078,020	56,061,920